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.

- (가) 작업 조건과 특성
 - 작업환경, 작업종류, 작업형태, 작업내용, 공사기간 등
- (나) 근로자 개인별 특성
 - 근로자 연령, 건강상태, 업무경력, 숙련도 정도 등
- (3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작업은 구명조끼, 구명로프, 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추어야 하며, 해상 안전작업 사항 등에 대한 공통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
- (4) 기타 현수교, 사장교 주탑 기초 시공시 공통적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1-2011)에 따른다.

6.2. 해상 작업선, 바지선 해상작업안전

- (1) 지반보강(SCP, CDM) 및 기초 굴착을 위한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작업 전 안전 조치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
- (2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묘박(Anchoring)작업 안전조치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 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
- (3) 안전조치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과 바지선위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(KOSHA GUIDE C-58-2012)에 따른다.
- (4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의 작업 중 안전조치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
- (5) 해상 작업선, 바지선에서 기계 및 장비 사용 작업 안전조치 사항은 사항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